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23

발의연월일 : 2024. 10. 25.

발 의 자: 안도걸 · 민형배 · 박홍배

양부남 • 조인철 • 전진숙

강유정 • 정일영 • 강준혁

정준호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여러 신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 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7년 12월 <u>31일</u>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의약품, 인공지능-----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 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 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 나. (생 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